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8조의 요약

차입금지급이자를 당기비용손실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적용함.

순위	항 목	관련 규정	손금불산입 계산방법 요건	손금불산입 처분
1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법 제28조 제1항제1호	채권자 인적사항 확인불능, 자금능력부적합, 거래사실불분명차입금 등	영구부인, 상여·배당처분
2	소득귀속자 불분명 채권·증권이자	법 제28조 제1항제2호	채권·증권발행법인이 직접 지급 시 지급사실의 불분명, 객관적 인정불능	영구부인, 상여·배당처분
3	건설자금총당 이자(특정차입금). 단, 일반차입금은 선택임.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인액 : $\text{Min}[\text{지출액 적수/사업연도 일수} - \text{특정차입금 적수/사업연도 일수} \times \text{자본화이자율}^*, \text{실제 발생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 자본화이자율 : $\text{실제 발생 일반 차입금 차입원가} \div \text{일반차입금 적수/사업연도 일수}$ 	손금불산입하여 유보하며, 건설원가 가산하여 감가상각으로 비용 추인함.
4	비업무용부동산, 업무무관 자산, 특수관계 가지급금	법 제28조제1항제4호가·나목	$\frac{\text{지급이자} \times \text{해당자산 적수} \leq \text{총차입금}}{\text{총차입금}}$ (1, 2, 3, 4, 5 제외후)	영구부인, 기타사외유출



●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총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건설자금에 총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30 신설)
- ③·④ 삭제 (2004. 12. 31)
-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Ⅰ. 차입금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개관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개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순자산이 감소되는 손금으로 인정되도록 본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제7호가 열거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1호·제2호·제3호에서는 채권자불분명이자, 소득귀속자불분명채권차액, 건설자금이자 등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본 조는 법인이 차입금에 의존하여 업무무관 부동산, 업무무관 자산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비생산적인 자산보유를 억제할 목적으로 이러한 자산의 취득이나 보유에 직접 및 간접으로 관련되었다고 계산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 제1항제4호는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업무무관 부동산이나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무조건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만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정도로 차입금을 과다히 보유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보유하거나 임야·농경지·목장 등 부동산 등을 보유한다면, 이러한 자산들의 보유가 차입금을 과다하게 한 원인으로 보아 법인의 차입금에 의한 지급이자 중 일정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차입금에 의한 무리한 확장이나 비생산적인 자산보유를 규제하였으나 2006년 사업연도분부터 폐지되었다.

본 조 제5항은 이러한 비업무·비생산 자산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이 동시에 적용되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소득자불분명한 채권·증권이자, 차입금의 일정비율, 건설자금이자, 비업무용 부동산과 자산의 지급이자의 순으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함께 부채비율이 크게 축소되고 있어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도는 유명무실해졌고 오히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초과차입금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제도가 2005년부터 폐지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출자지분 보유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도 2006년부터 폐지되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의 범위 종괄

① 업무무관 부동산과 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계상한 모든 법인은 법인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과 업무무관 자산 및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이 보유한 차입금의 보유비율·보유금액 및 차입금 의존도 등에 관계없이 지급이자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애초부터 법인이 보유할 필요가 없는 자산인데 조세정책목적상 이러한 자산보유를 규제하기 위하여는 차입금의 수준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

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II. 채권자불분명 사채(私債)이자 (법 제28조제1항제1호)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예외

① 일반 금융이자 아닌 사채이자

일반 금융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되면서, 과다차입금 및 비업무용 부동산·자산관련 이자가 손금불산입된다.

또한 본 호는 채권자, 즉 소득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자 불분명사채란 채권자의 주소·성명이 확인되지 않거나 차입거래가 타당하지 못한 경우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의 차입금이라고 다음의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포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제외한다.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② 개인의 비영업대금 중 소득세과세 안되는 부분

채권자가 분명하고 소득자가 파악되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비영업대금이므로 총소득×25%)되는 경우의 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불분명하면 상대방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손금불산입한다.

일반적으로는 비자금거래, 매출누락, 원가과대계상 등의 금액, 비근무자인건비 등의 개념으로 사채이자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판명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2. 사채이자의 범위와 외계·세무처리

① 사채이자의 범위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범위에는 알선수수료·사례금 등과 같이 명목에 불구하고 자금차입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대부분 가명개인의 사채자금대여, 특수관계기업의 비영업대금이자 등인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의 확인이 안되는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보유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지급하는 할인료(일명 와리깡)도 포함된다.

②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대표자상여처분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소득귀속자 불분명 지출이므로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귀속자는 파악되지 않지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될 성질의 지출이 아니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소득귀속자가 파악(주민등록기재 및 상대방의 자금능력입증)되고, 이자소득세 원천징수가 된 이자는 채권자 분명이자이므로 손금산입된다.

③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채이자의 소득처분

법인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지급이자 지출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가지급금 등 가공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가공자산은 그 자산성을 부인하여 일단 손금으로 처리한 후 당해 손금처리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이 경우에도 법인은 이에 대한 근로소득합산하고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④ 국·공채 등의 일시할인과 관련된 처분손실의 사채이자 간주

법인이 공장건물 등을 준공하고 이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국민주택채권 등을 매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 건축주인 경우에는 이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매입할 국민주택채권의 몫을 채권매매 및 대납알선자가 건축주명의로 대신 매입하여 동 매입필증만을 건축주에게 교부하여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건축주는 이에 대한 대가로 채권매매 및 대납 알선자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의 일정률(약 40%~50%) 상당액을 지불하고 동 금액을 유가증권 취득과 처분에 따른 손실로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액면가 5천만원, 할인율 50%인 경우 반액지불하는데 다음으로 회계처리된다.

○취득시

(차) 유가증권	50,000,000원	(대) 현 금	50,000,000원
----------	-------------	---------	-------------

○할인시

(차) 현 금	25,000,000원	(대) 유가증권	50,000,000원
채권매각손실	25,000,000원		

그러나 이와 같은 거래내용의 실체를 분석하면 건축주가 채권매매 및 대납 알선자로부터 국민주택채권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 알선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국민주택채권의 공금리(표면이자)와 시중의 사금리(사채이자) 차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 이자를 수령하는 채권매매 및 대납 알선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동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만일 당해 알선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면 당해 이자는 본 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서 손금불산입한다. 결국 이러한 방법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소화하면 세무상 불리하다.

따라서 우선 법인의 자금으로 당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동 채권을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증권회사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에게 매각하면 법인소

특금액 계산상 유가증권매각손실로 회계처리되며, 이는 투명거래로 손금산입 될 수 있어 유리하다.

III. 채권차익의 소득자불분명이자 등 (법 제28조제1항제2호)

① 일반 금융이자비용 중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국가 등의 채권이자, 내국법인발행채권·증권이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발행 채권·증권이자, 외국법인 채권·증권이자,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등의 이자와 할인액 중 소득지급받는 자가 분명하면 귀속소득의 이자수취자가 분명해 소득세가 과세(분리과세 원천징수 혹은 종합과세 신고납부 등)되므로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된다. 그러나 차익이나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하면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지 않으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한다.

② 소득지급받는 자 불분명, 지급사실 불분명한 경우

채권·증권관련 차익·이자·할인액을 채권·증권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할 때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한다. 소득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경우란 주소·성명 불분명 및 지급원천불분명자를 말하는데, 채권·증권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만 부인한다. 그러나 채권·증권발행법인이 증권회사 등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는 거래관계가 분명하므로 손금산입한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범위】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IV. 건설자금 중당차입금이자 (법 제28조제1항제3호)

1. 본 호의 개요 및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이유

지급이자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순자산이 감소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지만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라면 당기금용비용이 아니라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봄이 타당하다. 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은 아직 수익에 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관련 지출은 모두 건설가계정으로 대체된다.

건설기간중의 차입금이자 역시 당기의 경상적 수익에 대응되는 금융비용이 될 수 없고 당해 자산의 건설을 위한 원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설자금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취득원가로 하며, 당기비용처리하였다면 손금불산입 유보로 이월된다. 손금불산입액은 원가반영 후 건설 완료되면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되어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산입되는 것이다.

다만, 2010.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K-IFRS에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강제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 이자는 종전과 같이 강제적으로 자본화 하여야 하며, 일반차입금 이자에 대하여는 비용으로 반영하거나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다.

①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 개요

법인의 자금은 신규시설자금 뿐 아니라 경상적 운영자금도 있는데 돈의 꼬리표가 있더라도 조달된 자금이 명확히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건설자금이자의 배분계산이 어려운데, 종전에는 총자금 사용실적과의 안분평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었다.

그러나 기업회계와의 일치 및 명확성을 위해 당해 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불분명차입금은 제외), 즉 건설에 직접 관련된 이자만 건설자금이자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규정상 표현으로는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

명하지 아니한 차입금(특정차입금)을 제외한다”라고 하였다.

② 기간비용의 적정화와 건설관련 직·간접원가의 배분목적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은 당해 지급이자의 영구적 손금부인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에만 손금부인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투입되는 원가에는 당해 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되는 일반원가뿐 아니라 소요자금의 조달에 따른 간접비용인 지급이자도 취득원가로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고정자산 시설의 건설을 위해 외부에 발주하였다면 건설업자의 제반 원가에는 직접 원가 뿐 아니라 장기공사 진행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등이 모두 감안된 가격이 발주가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금사정상 장기할부계약방식으로 발주하였다면 분할기간만큼의 자금조달비용이 포함된 가격으로 발주가격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자산 시설을 법인 스스로 자금조달하여 자체 제작하는 경우 건설원가 산정에서 외주공사비·제작비 등 직접 소요원가만 계상한다면 외부에 완전발주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이론적으로는 자금조달 비용만큼의 공사원가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조달 차입금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경상비용, 손금으로 보지 않고, 공사원가에 가산하여 당해 고정자산 시설의 감가상각 기간동안 감가상각비로 서서히 손금화 되도록 한 것이다.

③ 금융이자소득 파악과 과세자료 양성화

또한 앞의 제1호·제2호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법인비용의 손금요건으로서 명확한 증빙의 필요와 사채이자 귀속자의 소득자료 파악 및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확보 등의 필요성에 의거 법인의 과세협력의무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2. 건설자금이자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불산입 및 과세이연

1) 건설자금이자와 당기비용성, 취득원가성

고정자산을 자체 제작 및 건설하거나 외부에서 매입시 동 자산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려면 상당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되는데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필요

한 자금은 법인 내부의 유보이익을 사용하거나 신주발행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고 또는 법인 외부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할 수도 있다. 자금조달시 법인의 유보이익이나 주식발행자금인 경우, 법인의 내부이자율에 의한 내재이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며, 외부로부터 차입한다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입금으로 충당할 때 당해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및 건설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라 한다.

①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원가성과 자본화 추정

차입금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그 자산의 건설·제조·제작 및 매입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자본화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원가에 산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자본화할 이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찬반의 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의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은 모두 이자의 자본화 견해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이자란 자금원천과 관련없이 자금사용과 관련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금사용에 따른 발생이자는 재료비, 노무비 및 기타 자원들의 원가와 동일하게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원가이므로 당연히 자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을 하기 위하여 조달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비용으로 계상한다면 아직 건설기간중이므로 그 기간비용에 대응하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K-IFRS에서 건설자금이자를 강제적으로 자본화하고 있다.

② 건설자금이자의 당기비용성 주장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할 수 없고 당기비용화 한다는 견해는 건설원가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채무비용으로 간주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 지급이자는 차입금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동 차입금은 자기자본의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 부족자금은 증자 등 자기자본에 의해서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차입하였기 때문에 재무구조선택에 따라 회피 가능한 비용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회피가능한 비용을 고정자산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은 자산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이라는 주장하에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원가성을 부인하고 당기비용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③ 기업회계와 세무상의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원가성 입장

법인세법은 본 호 규정으로서 건설자금이자의 원가성을 인정하여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차입금이 아닌 일반차입금에 대하여는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자금을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기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손금불산입되는 다른 일반비용과 같이 영원히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지급이자 발생연도에는 손금불산입하더라도 동 건설자금이자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감가상각되면서 손금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토지와 같은 비상각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토지의 매각시점에서 일시에 전액 손금으로 용인되어 그만큼 양도차익이 감소된다.

한편 기업회계기준도 다음과 같이 유형자산 제조·매입·건설에 사용된 차입금 건설자금을 취득원가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국제회계기준 제1023호 【차입원가】

8.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9.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를 구성한다. 이러한 차입원가는 미래경제적효익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할 경우에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보상하기 위한 차입원가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문단 21에 따라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 18.4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

동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이하 “적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원가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적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가이기 때문에 적격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기업회계상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세법상의 규정과 근본적으로 같은데 계산방법은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이면 인정된다고 보며, 현행 법인세법상의 계산 방법대로 반영하여도 적정계상 문제에 있어서 별다른 하자는 없다고 본다.

2)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① 건설자금이자의 포함 범위

본 호는 건설자금이자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제반 금융비용이 해당된다고 다음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상기 시행령 규정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개념의 구체적 요소는
 i) 지급이자 발생되는 차입금의 사용 대상이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하며,
 ii) 법인의 자금사용 지출행위의 범위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

에만 국한되므로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이나 개량은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iii) 당해 고정자산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가 분명한 차입금에 한하며, iv) 차입금의 명목이야 어떻든 지급이자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및 제반 금융비용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되려면 상기 세가지 요소가 동시에 해당되어야 한다.

② 고정자산건설 등 소요차입금이자의 건설자금이자와 당기비용계산 판단

손금여부 항목구분	건설자금이자계산 (당기 손금부인, 유보이연)	당기손금산입되는 비용·손비
차입금의 대응성	건설 등 소요됨이 분명한 경우	건설소요여부 불분명한 차입금
건설자금투입시점	건설 등 준공일까지	준공일 다음 날부터의 지급이자
운용자금전용여부	건설자금에 사용한 자금	운용자금에 일부 전용시 해당이자는 손금, 건설에 미사용분
건설대상자산	매입·제작·건설 등 신규·재축 개념	증축·개축·개선·개량 등

(1)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① 사업용 고정자산의 개념과 범위

고정자산의 취득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규정은 당해 고정자산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법인의 보유자산 중 사업용 고정자산에 관련하여서만 건설자금을 계산한다. 특정자산이 사업용인지의 여부는 각 법인의 사업목적에 견주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비업무용 자산 등은 사업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상의 유형자산 규정

여기서 고정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본 법에서는 특별히 정의하지 않았지만 국세기본법 제20조에 규정된 기업회계기준중의 원칙에 의거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고정자산 범위를 준용하면 된다.

관련법령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46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한다. 유형자산의 과목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토지
- (2) 건물 : 건물, 냉난방, 전기, 통신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 등
- (3) 구축물 : 교량, 궤도, 갭도,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 (4) 기계장치 : 기계장치·운송설비(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 등
- (5) 건설중인자산 :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 포함)
 - (나)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 (6) 기타자산 : (1) 내지 (5) 이외에 차량운반구, 선박, 비품, 공기구 등 기타자산
 다만, 문단 10.3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③ 판매목적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 제외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자산은 실물현황이나 물리적 형태에 불구하고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므로 기업회계목적으로는 건설자금이자계상이 가능하나 법인세법상으로는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판매용 주택이나 토지개발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판매목적 고정자산의 범위와 건설자금이자계산 여부

이밖에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으로는 사업목적상 사육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중 일부를 분양한다면 분양하는 부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어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으며,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임대해 공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상가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반면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용 아파트는 일

정기간 임대 후에 판매되는 자산이므로 임대사업에 공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

(2) 매입·제작·건설의 범위

① 매입·제작·건설의 개념

법인이 계속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및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만 손금불산입되는데, 여기서 매입·제작이나 건설은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용에 공하기 위한 최초의 원인행위이다. 특히 차입금은 이러한 원인행위의 발생을 전후하여 소요된다고 보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그러나 기존 고정자산의 수선·개선인 경우는 아무리 금액이 크더라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매입·제작·건설의 개념에서 증설이나 개량은 제외하고 있는데,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이나 개량 정도는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로 계상할 정도의 원인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기계·장치 등의 매입에 있어서 당해 기계·장치가 계속 영위하는 사업에서 기존에 생산해 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유사설비인 경우에는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계속 생산해 오던 제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신규매입 등으로 보아 당해 기계장치 매입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한다.

② 건설자금이자계산이 제외되는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의 개념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기존 고정자산에 대한 증설이나 개량을 위한 차입금이자 는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할 수 없고 기간비용으로 보아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증설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아니며, 개량은 수선·유지를 위한 공작과 유사한데, 수선이나 유지는 고정자산의 성능을 정상적인 상태로 하는데 필요한 공작인 반면 개량은 그 성능을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데 필요한 공작이다.

③ 증설·개량의 범위와 신축 등과의 구분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의 범위에의 해당 여부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하여 판단한다. 건축물에 대한 공사가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증축”이나 “대수선”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은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건축물에 대한 공사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신축” “개량” “재축”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에 설치하기 위해 매입하는 기계·장치까지도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계상한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 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8. 10. 29 개정)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상기 건축법시행령에 의거 건물·공장 등 건축물의 증축과 대수선은 증설·개량의 범위가므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아니나 신축·개축·재축 등은

건설자금이자 대상이 된다.

이밖에 기계·장치에 대해 신축공장 등의 신규매입설비(신규매입 기계장치 포함)와 기존 생산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의 생산설비의 신규매입 등은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이지만 기존 생산제품에 대한 생산설비의 신규매입은 증설·개량에 해당되므로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다.

(3)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지급이자 및 유사지출금의 범위

① 지급이자 등의 제반 금융비용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을 위한 지급이자란 계정과목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급이자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지출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차입금에 대한 할인료, 지급보증료, 신용보증료, 차입알선수수료 및 건설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추가 차관자금 이자도 모두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② 사채발행차금상각 및 관련비용 모두 계산대상임

기업회계기준은 사채액면가액에서 사채발행가를 뺀 금액을 사채발행차금이라 하여 향후 할인차금은 분할상각, 할증차금은 분할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채발행가는 사채발행시 자금유입액에서 사채발행수수료, 직접 발생비용 등을 모두 차감한 후의 가액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사채발행비로 모두 사채발행차금에 몽똥그려 포함시킨 후 나중에 상각이나 환입으로 처리된다.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포함된 사채발행비용도 모두 향후 감가상각되면서 사채이자로 합산되고 지급이자로 분류된다.

관련 기업회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기업회계기준 제28조 【사채발행차금】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하여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65조 【사채발행차금의 처리】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동 상각 또는 환입액은 사채이자에 가감한다.

세무상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정규지급이자 뿐 아니라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금액인 사채이자도 포함된다.

③ 고정자산건설 등에 직접 관련된 차입금이자

고정자산 건설 등에 명백히 직접 연관된 차입금 이자만 손금불산입한다. 반면에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자금이라 할지라도 건설자금에 전용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연히 건설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반대로 건설자금 명목의 차입금이라도 운용자금 전용금액은 당기 경상비용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한다.

④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의 준공전까지 건설기간에 발생한 총 지급이자

건설자금이자는 건설기간에만 발생한 총 지급이자인데, 건설기간의 종료일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로 본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일과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이다. 또한 일반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개시일이다.

종료일 이후의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이 비록 건설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음지라도 기간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또한 건설기간 중 차입금의 일시적 예치·예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순액만을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한다.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 등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2010. 12. 30 개정)

⑤ 건설자금의 운영자금 사용분 및 준공후 이자는 당기비용으로 반영

건설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만 건설자금이자로 한다. 그 나머지는 모두 당기경상비용 지급이자로 처리한다.

◎ 차입자금의 일부 운영자금 전용시 → 전용부분 자금이자는 전액 당기 손금 사항임.

◎ 건설자금차입금이지만 건설준공후에도 존속되는 차입금 → 준공 이후 차입금이자에는 전액 당기 손금사항임.

◎ 준공일은 건설 등의 목적물 전부 준공을 뜻함. 부분 준공의 경우는 전부 준공될 때까지 건설자금이자 계산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⑥ 고정자산의 건설준공일 혹은 사용개시일까지 건설자금이자계산

건설자금이자에는 건설준공일까지만 계산하고, 준공일후부터의 차입금이자 당기 비용, 즉 당기 손금으로 직접 계상반영한다.

준공된 날은 대금청산일(토지매입), 사용인(대금청산전 사용시), 건축물의 취득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 사용개시일(기계 등) 등이다.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⑥ 제2항 및 제5항후단에서 “준공된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2008. 2. 29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2010. 2. 18 신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2010. 12. 30 신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10. 12. 30 신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2010. 12. 30 신설)


⑦ 건설기간의 기산일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요소인 건설기간의 판단에 있어서 그 종료일만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건설기간의 기산일도 건설자금이자금액 결정에 중요하다. 즉, 건설에 착수하기 전에 건설 등의 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한 경우 건설기간의 기산일은 채권의 발행일 또는 차입금의 발생일이다.

⑧ 총 지급이자와 발생주의 개념상의 지급이자

지급이자의 확정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하는데 건설기간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는 물론 미지급된 지급이자도 포함하며, 비록 법인이 미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지급이자라면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그러나 건설기간 이전 해당분 지급이자는 차감하여야 한다. 손비처리된 총 지급이자를 대상으로 건설자금을 계산하는데 차입금의 연체이자 원본에 가산되었다면 가산금액도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원가반영한다. 원본에 가산한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이자는 전액 손금산입한다고 다음의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⑨ 건설자금의 일시예치 수입이자 및 자본적 지출가산액 상계차감

만일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상당액을 일시 예금한 경우 수입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에서 차감한다. 즉, 건설자금이자 계산금액에서 빼준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 기업회계기준도 수입이자를 차감하도록 규정하였었는데 개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타당한 회계처리로 간주된다. 즉, 기업회계도 세무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차감순액 감액처리한다.

3) 고정자산 건설소요분명차입금

① 자금소요 분명차입금만의 건설자금이자계산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가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사지출금만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한다.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요여부의 분명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기업회계상으로는 건설 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원용하여 건설에의 소요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당해 고정자산 건설전후의 차입금 증가액, 특정목적용 겨냥하는 차입금 및 사용조건부 차입금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사용귀속과 소요여부를 판정하여 당해 고정자산건설 등에 직접 연결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다.

② 자금소요 불분명차입금의 비용인정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소요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일반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로 선택하여 자본화 할 수 있다. 반면에 건설소요 분명차입금이자자는 비용부인하여 건설자금이자로 반영한다. 종전에는 건설자금에 소요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하여는 재고자산적수와 건설가계정적수만큼의 금액비율로 배분하여 건설가계정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만큼만 건설자금이자로 하여 손금에 불산입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건설소요분명한 차입금이자만 건설자금이자로 한다. 따라서 현재는 배분할 필요 없이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직접 파악하여 건설자금이자로 하고 손금부인한다.

4)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① 건설자금이자 과다계상시의 초과금액 손금산입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스스로 정확히 계산하여 결산상 고정자산 취득가액

에 반영하였다면 이미 동 건설자금이자 손금에서 부인되어 있고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어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과의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결산상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법인이 건설자금이자 회계상 계상한 금액과 세법상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건설자금이자를 과소하게 계상한 경우(미계상 포함)에는 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회계상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이렇게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서 감가상각 범위액을 크게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화되거나 매각시점에서 일시에 손금으로 추인된다. 그러나 법인이 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보다 과다하게 회계상 계상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손금산입한다. 즉, 세법상 금액까지만 손금부인하고 그 나머지는 당기비용처리 및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② 건설자금이자 미계상시의 즉시상각의제

당해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이 상각자산이고 당해 연도에 건설 등이 완료된 경우로서 법인이 지급이자를 당기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세법상 계산된 건설자금이자를 바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동액만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하는데, 당기 비용처리이자 각 자산별 감가상각비의 시부인액에 포함시켜 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한다.

③ 건설중 자산인 경우 미계상액의 전액 손금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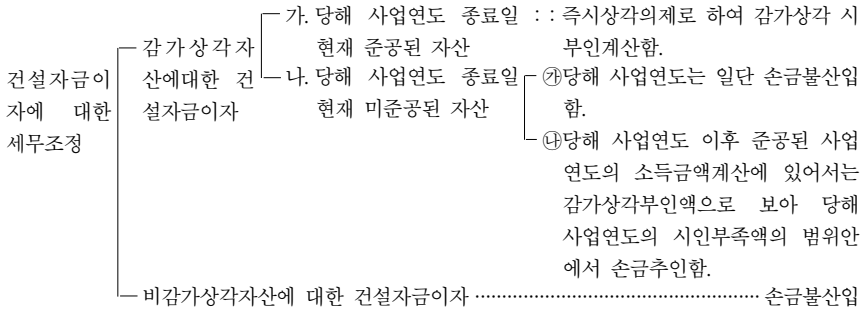
그러나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된 고정자산이 상각자산일지라도 각 사업연도말 현재 아직도 건설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상각대상금액이 없어서 즉시상각의제될 금액이 아니므로 건설자금이자를 일단 전액 손금불산입하게 된다. 그리고 추후에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손금불산입된 건설자금이자를 상각부인액으로 보아서 당해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한다.

④ 비상각대상자산의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된 고정자산이 비상각자산일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전액 손금불산입되며 이는 동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추후 자산을 매각하는 사업연도에 고정자산매각익을 감소 또는 고정자산매각손을 증가시킴으로써 손금추인한다.

⑤ 건설자금이자 계상액의 세무조정 요약

이상의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⑥ 건설자금이자의 손금추인사례

손금불산입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추인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 례】

- 사업연도 : 02년 1월 1일 ~ 02년 12월 31일
- 건설완료일 : 02년 6월 15일
- 자산 취득가액 : 4,000,000원
- 손금불산입된 건설자금이자 금액 : 500,000원(전기에 당기비용처리액으로 전
기 이전 건설자금이자만 있었다고 가정함)
- 내용연수 : 10년
- 회사의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 ⇒ 02년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250,000원
 - ⇒ 02년도 감가상각 한도액의 계산 : $\{(4,000,000 + 500,000)\} / 10 = 450,000$
 - ⇒ 상각부족액 : $450,000 - 250,000 = 200,000$ 원

상기 사례에서 손금불산입으로 누적된 건설자금이자(500,000원)는 건설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으로 유보되면서 추후 상각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자본적 지출액 500,000원 중 200,000원은 건설완료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유보)받는다.

회사가 매연도 감가상각비를 400,000원씩만 계산한다면 매년 세무상 감가상각비한도액은 450,000원(=4,500,000÷10년)이므로 결국에는 건설자금이자로 손금불산입된 500,000원 중 매년 한도 부족분 50,000원이 계속 손금산입된다.

V. 업무무관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 제28조제1항제4호가목)

1. 업무무관 자산취득·보유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업무무관 부동산⊕업무무관자산⊕특수관계 가지급금 등 자산가액 해당 지급이자 손금부인

법인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자산(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안한 부동산⊕유예기간내 사용안하고 양도한 부동산⊕서화·골동품, 업무미사용 자동차·선박·항공기 및 무관자산 등)을 취득보유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이자 중 해당 자산가액이 총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해당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이러한 자산은 법인의 수익창출에 당장 기여하지 못하거나 조세정책상 특별히 규제대상이 되는 자산이나 자금지출액인바, 차입금비율·재무구조 등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에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계상반영되어 있거나 하면 손금불산입으로 계산한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방법과 계산산식

① 지급이자 부인대상자산에 상응하는 차입금비용

본 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비업무용 자산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경우는 차입금의 구성비율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지급이자를 발생시킨 총 차입금의 적수 중에서 업무무관 부동산과 자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총 지급이자에 곱하여 손금불산입액을 산출한다. 손금불산입액은 차입금 중에서 당해 업무무관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을 한도로 하며, 손금불산입 금액이 지급이자 자체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각 자산적수의 합계는 총 차입금적수를 상한으로 하고 있다.

계산공식에서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는 전단계 손금불산입 해당분, 즉 해당이자, 해당 차입금 상당액을 각각 차감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는 이중삼중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업무무관 부동산과 자산 등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산식

업무무관 부동산,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거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계상 반영 보유한 법인은 차입금 지급이자 해당액 중 당해 비율만큼을 무조건 손금불산입하는데 계산산식은 다음의 시행령 규정에 의한다.

상기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표현된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text{총차입금}}$$

상기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표현된다.

[업무무관 부동산·자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text{총지급이자} \times \frac{\text{업무무관부동산·업무무관 자산가액 등 한계액 적수} (\leq \text{총차입금적수})}{\text{총차입금적수}}$$

3.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방법 (법 제28조제6항)

1) 지급이자의 개념 및 범위

① 사업연도 전체의 지급이자 발생액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총 금액인데, 타법인 주식의 취득시기, 가지급금의 지급시기 및 업무무관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 시점 선후와는 관계가 없이 1년간 지급이자총액으로 한다. 따라서 업무무관 자산을 사업연도 후반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대상되는 지급이자나 차입금은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적수계산한다.

② 발생주의로 계산한 지급이자

계산공식에서 지급이자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데 대응하여 지급된 금융비용 전액을 말하는바, 지급이자는 발생사실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므로 미지급이자계상액을 포함하며, 미경과이자 및 선급이자는 제외된다. 현금기준으로 지급이자를 장부기장하였다 하더라도, 장부상의 지급이자에 미지급이자를 가산하고 미경과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

① 자금조달목적 관련 차입금 등 모든 금융비용

일반 상업어음의 할인은 선이자를 제한(뺀) 자금이 입금되고 받을어음 계정금액은 소멸되어 우발채무로만 남는다. 어음할인관련 대변계정금액에서 차입금계정으로 보지 않으며 이의 할인이자도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에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유통어음을 할인하면 법인의 정상적 회계처

리에서 어음에 대한 담보보증책임이 있는 경우 차입금으로 기표하는데 이에 대한 할인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밖에 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터링회사로부터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도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바,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팩터링회사가 금전을 대부한 경우라면 당연히 부채(차입금)로 되고 지급이자로 본다.

팩터링이란 생산자 또는 상인의 수취채권을 할인하여 사고 그 대가로 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factor)이 수취채권을 매입하는 행위자체를 말하는데 금융기관은 소구권도 가지지 않고 채권에 관한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며 채권의 추심도 자기가 직접한다.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않고, 이에 따라 지급된 할인료는 당연히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매출채권을 팩터링회사에 매각하고 발생한 수수료도 동일한 취지로서 지급이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반면에 상업어음할인해도 당해 어음의 배서책임이 있다면 어음담보로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련 할인이자(와리깡이자)는 지급이자로 반영된다.

② 지급이자의 중복 손금불산입은 아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대해 여러 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한번 부인된 금액이 다른 계산논리에 의거 중복부인되지 않도록 시행령 제55조가 규정하고 있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제표상의 세무지급이자 총액에서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와, 지급받은 자 불분명채권·증권이자·할인액·차익을 빼준다. 둘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서 빼준 후 건설자금이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세무처리한다. 마지막으로 본 조의 비업무용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한다.

③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등 기타 지급이자

사채발행시의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에 대한 이자의 선급분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당해 선급이자 중 당해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발생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매기 상각액은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밖에 법인이 주식을 매입할 때 매입대가의 일부를 주식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이자가 발생한다면 주식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부분 금액도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3) 지급이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①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포함된 것

원자재구입 금융지원 자금이자 등도 당기의 손금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수출대금결제시 발생하는 환가료 및 유전스이자 등과,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D/A이자 및 Usance이자는 지급이자가 아니고 매입부대원가가 된다. 단,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별도의 당기경상지급이자로 계상시에는 당기비용으로 인정한다.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에서는 D/A이자와 공급자신용이자(쉽퍼스유산스), 그리고 일반 은행신용이자(뱅크스유산스)는 차입원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연불 매입가격에 포함된 지급이자

판매자로부터 고정자산을 직접 연불로 매입한다면 판매자는 연불가액에 지급이자를 감안하는데 매입가격에 포함된 지급이자상당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또한 이자상당액 지급방법이 별개로 되어 있더라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직접 가산한다. 그러나 이자상당액의 변동이자율 지급에 따른 증가액은 취득가액이 아니고 지급이자이다. 연불매입관련 지급이자의 취득원가가산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결정에만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고정자산이 아닌 투자자산 등이라면 연불매입 지급이자는 취득원가가 아니고 지급이자로 본다.

예를 들어 다른 법인의 주식취득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 이외에 부분금의 지급시까지 일정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실제로 그 이자를 지급하면 이는 주식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지출된 금융비용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식의 연불조건 취득시의 지급이자상당액과 연불조건의 매입채무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의 지급이자와 총 차입금의 범위에 모두 포함시켜

야 한다.

③ 부당행위계산 부인된 지급이자

순자산 감소개념에 의거 자금조달을 위한 필요경비인 모든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의 지급이자명세에 대표이사 가수금에 대한 지급이자나 이율·상환기일 등의 구체적 약정없이 관계회사 등의 차입금액을 가수금으로 기장하고 지급이자 등을 계상하였으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성격의 지급이자나 특수관계자에게 정상이율보다 고율로 계산된 지급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들은 본 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거 지급이자가 부인될 수 있다. 이러한 지급이자 부인금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본 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계산대상 범위에서도 제외된다.

④ 지급이자 유사항목으로서 지급이자 아닌 것

이밖에 자산이나 설비의 도입 및 사용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지급이자 유사항목이지만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는 대부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투신·보증기금 등)의 수신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이 보증사채를 발행하고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 운용리스조건에 의해서 지급하는 리스료 등이 있다. 따라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있다면 운용리스계약으로 설비투자함으로써 지급이자가 아니고 리스료로 계정처리되므로 손금불산입의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 손금불산입계산의 차입금 범위와 적수계산

(법 제28조제6항)

① 지급이자부인 계산요소의 적수계산 및 동일인 상계 등

업무무관 자산, 특수관계 가지급금관련 지급이자는 적수개념으로 계산하는데, 동일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한 잔액으로 계산한다. 업무무관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시가초과액도 포함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제3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② 각 계산요소를 적수로 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관련 계산에서 총 차입금 자산가액 등은 적수계산한다. 이밖에 자기자본, 업무무관 부동산·자산,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도 적수로 계산한다. 여기서 자기자본은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말한다.

자본계정으로만 본다면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적립금,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와 당기순손실 또는 당기순이익을 가감하여 계산한 순자기자본금액을 말한다.

③ 차입금 및 업무무관 자산의 날짜별 단위 적수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산식의 계산요소들 중 총 차입금, 자기자본, 업무무관부동산, 업무무관자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적수계산이란 당해 거래의 발생일로부터 보유기간 중의 변동사항, 소멸일까지의 매 일자별로 적수를 누계한 날짜별 계산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즉, 무조건 일별 계산방법으로만 적수계산해야 한다.

④ 차입금 적수계산 차감

계산산식에서 차입금 적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및 소득귀속자 불분명이자 해당부분, 업무무관 부동산·자산 지급이자 해당부분 등을 순차로 차감하여 계산공식의 총 차입금적수로 한다.

⑤ 금융비용 부담하는 장부상의 부채

차입금이란 앞에서 설명한 금융비용인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인데 할인어음 자체는 차입금으로 보지 않으며 금융리스의 리스료 중 이자를 제외한 미지급리스료는 차입금의 일부이다. 즉, 차입금이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과 관련된 모든 차입금을 포괄한다.

⑥ 금융기관의 일반 고객예탁금·수탁자금 등 제외

금융기관이 재정용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용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및 법령상의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금융기관 등의 일반 수신자금(고객예탁금·예금 등)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경우 특별한 금융기관 차입금이 없는 한 일반고객 수신자금은 차입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급이자 부인될 경우는 거의 없다. 여기서 수신자금은 예금증서 발행이나 예금계좌를 통해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수납·관리·운용하는 자금이다.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2010. 2. 18 개정)
 -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6. 12. 30 개정)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008. 2. 22 개정)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⑦ 기간 선후관계없는 연간 총액 적수 계산의 문제점

손금불산입금액의 계산상 지급이자와 총 차입금의 적수를 연간총액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무관 부동산 등의 보유기간이 사업연도 일부라면 업무무관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지급이자나 차입금도 계산요소에 포함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 또한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까지도 포함된다. 이는 건설자금이자는 다른 제지급이자부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지급이자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는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업무무관 부동산 및 자산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마지막으로 적용되고 채권자불분명이자, 건설자금이자 등은 그 이전단계에서 부인계산되므로 합산되지 않는 계산결과가 된다.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의 가액결정 및 계산

①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함

지급이자손금불산입금액의 계산공식에서 분자금액인 각 자산가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업무무관자산(서화·골동품 등) 등은 회사의 실제 자금투자 소모액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시가초과액도 포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무관 부동산이나 기타의 업무무관자산은 그 성격상 물가변동에 따라 계속 가격이 상승되는 자산이므로 가액결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은 당초의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위한 계산산식에서 적수계산하는 것이다. 취득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당해 자산양도일 등 최종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업무무관 자산이나 가지급금은 계상액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을 제외한 업무무관 자산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가액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들은 화폐성 자산으로서 물가나 시세변동에 별로 관련이 없는 가액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법인의 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세무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VI.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데 차입금 규모나 비율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산식상의 가액은 장부상 가지급금 계상금액이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비업무용 부동산과 자산+가지급금)가액의 적수합계}}{\text{총차입금적수}}$$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및 계산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되는 것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라면 세법상 어쨌든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여기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이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다음의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대여액 등이란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실제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11. 6. 3 개정)

② 특수관계 가지급이라도 업무관련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것

상기 시행령 단서에 따라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불이익 예외로서 제44조 규정의 월정급여 범위내의 '일시적 가불금', '직원 경조사비 대여액' 등 인정이자 계산대상 제외금액, '사용인 및 자녀의 학자금 대여액' 등이 규정되어 있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3.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text{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text{종합소득 총결정세액} \times \frac{\text{미지급소득}}{\text{종합소득금액}}$$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제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011. 2. 28 개정)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 (2003. 3. 26 신설)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2006. 3. 14 개정)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한 금액

(2011. 2. 28 개정)

③ 동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중복적용

본 조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해당액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본 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동일 가지급금에 대해 차변(자산)측면에서 이자수입계산 익금산입을, 대변(부채)측면에서 이자부인 손금불산입의 세무불이익을 이중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이면서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에 다시 포함되는데 동일 가지급금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논리적 모순의 측면도 있으나, 이러한 이중적 조세부담은 각 법조문의 목적이나 취지 차이에서 오는 결과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 하면 본 법 제52조에 의한 인정이자계산이란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 및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의 무상 및 저율 대여로 인해 그 법인에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이자수익을 포기하면 정부가 그 포기한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 후 그 혜택을 받은 상대방 별로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처분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려는 규정인 반면, 본 조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방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의 규제는 자금의 비생산적인 사용에 따른 지급이자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자기자본으로 경영하여 법인의 손금부담이 적고 법인세가 많이 계산되는 법인에 비해, 차입경영하여 이자가 많은 법인에 불이익을 주고 자기자본경영을 유도하거나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④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여부 및 손차회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과 관련한 가지급금에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이를 상계하여 계산하며 가지급금의 회수시에는 먼저 지급한 금액부터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동일인 가지급금·가수금이라도 상환기간 등의 약정이 있거나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사실상 동일인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⑤ 가지급금 지급이자의 적용배제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본 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지 않는다.

2. 특수관계자의 범위

본 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본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한한다. 법인의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 본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본 법 제52조의 해설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VII.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순위 (법 제28조제5항)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계산적용순위

① 시행령상의 법정순위규정

본 항은 본 조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 경우에 i) 채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채의 이자, ii) 소득자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

자·할인액 또는 차익, iii)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iv) 비업무용 부동산과 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보유에 대한 지급이자의 순으로 계산하여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에 의한 여러 가지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행령이 정하는 순위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3. 삭 제 (2005. 2. 19)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5. 삭 제 (2006. 2. 9)
6.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② 법정적용순위의 규정이유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순자산 감소로 법인의 손금이 원칙이나, 차입금이 없는 법인과의 과세형평 및 차입금 의존에 의한 기업확장을 규제하기 위하여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었다.

조세절약목적상 법인은 지급이자 등을 일부 재고자산이나 다른 계정에 처리하기도 한다.

지급이자가 법인의 장부상 실제보다 적게 계상되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적어져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따르는 경우도 실제 계상한 법인보다 유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일부나마 규제하기 위해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상기 시행령 제4호의 건설자금이자 손금부인은 영구히 부인되는 것이 아니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어 감가상각 기간에 걸쳐 손금 반영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런 이유 때문에도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는 중요하다.

참고로 각 항목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순위 및 처분을 다음의 비교표로 설명한다.

순위	구분(근거법령)	지급이자부인 조건	소득 처분	영구부인 여부
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의 이자(법 제28조제1항제1호)	무조건 부인	배당·상여·기타소득·이자	영구 부인됨.
②	소득귀속자 불분명 채권·증권이자·할인액·차익(법 제28조제1항제2호)	무조건 부인	배당·상여·기타소득·이자	영구 부인됨.
③	기준초과차입금 등 지급이자(법 제28조제2항)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 초과(2001년까지는 5배)	기타사의유출	영구 부인됨.
④	건설자금이자(법 제28조제1항제3호)	건설가계정	유보(사내유보)	감가상각으로 차후 손금추인됨.
⑤	다른 법인주식이나 지분(조특법 제135조)	차입금 과다보유시(차입금>자기자본×2)	기타사의유출	영구 부인됨.
⑥	업무무관부동산, 업무무관자산,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법 제28조제1항제4호)	모든 차입금 보유 법인	기타사의유출	영구 부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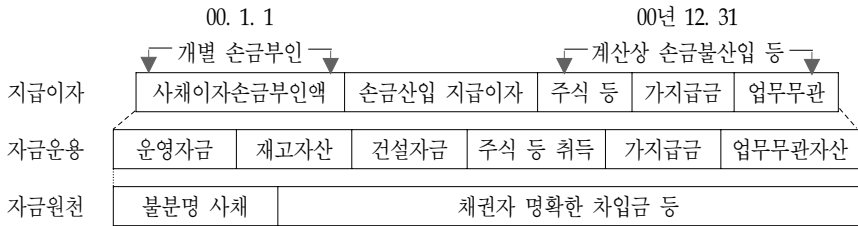
2. 법정순위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요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항목의 적용순위 중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등 취득관련이자, 모든 차입금 보유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 등 관련이자는 지급이자의 속성과 차입금적수와의 상관관계에 의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하므로 이들간의 지급이자 순차상계와 차입금적수 순차상계의 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금액 결정상 중요하다. 반면에 건설자금이자는 재고자산적수와 건설가계정적수간의 지급이자 금액 배분문제이므로 지급이자의 순차적 차감금액만 계산하면 된다.

① 지급이자와 차입금의 대응성 및 관련성 분석

지급이자와 할인료는 법인이 활용하는 제반금융수단으로 인해 발생되는데,

계산산식상 차입금은 일별적수 계산방식으로 하고 있고 지급이자(총 누적액)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지급이자 자체가 차입금적수와 정확히 일치되지는 않는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그림에서 보듯이 지급이자는 자금이 운용에 따라 계산상 대응되는 것이지 자금의 원천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이자 자체도 당해 자금 내역별로 개별 및 직접 대응되지는 않는다. 이밖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는 자금의 원천이면서도 자금의 운용과 같은 개념에 의거 적수계산되는 점도 있다.

② 지급이자와 차입금의 총적수 순차계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건별 구체적 개별 대응개념이 아니라 계산상의 대응 개념인데 지급이자는 사업연도의 총액을, 차입금은 사업연도내의 일별 적수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정 순위에 따라 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를 동시에 단계별 차감방식에 의해 계산하여야 적절한 금액이 산출된다. 만일 어느 한쪽만 차감하면 계산금액의 가중치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물론 지급이자 총액과 차입금적수 총액을 대상으로 각 자금원천에 따라 지급이자를 배분할 수도 있으나 계상된 차입금적수에 비해 지급이자를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여 지급이자가 적게 계상된 경우를 규제할 수 없어 계산상 불편하더라도 적용 순위를 확정 열거하고 순차적으로 부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금액 규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